

火災保險과 火災豫防活動



李 相 臣

〈前 火保協會理事〉

目	次
I. 序	言
II. 火災保險業務	
III. 火災豫防業務	
IV. 結	言

I. 序 言

本人은 1974년 12월부터 1981년 12월까지 滿 7年을 火災保險協會任員의 한사람으로 奉職하여 왔으며 이제 野人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거리를 두고 그간 取扱하여온 業務를 檢討하여 보면 자랑스러운것도 있는 反面 낮봄어지는, 生覺하고 싶지않은 그러한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비단 火災保險協會를 떠난 사람만의 特許物이 아니라 火災保險協會와 因然을 가진 모든사람에 共通된 徵候인 것으로 生覺된다. 우리는 이 機關, 이 業務, 이 使命이 發展되기를 모두가 바라는 바이며, 決코 쇠퇴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對內的으로 또는 對外的으로 從從 있을수 있는 사소한 마찰 또는 不協和音은 어디에 그 根源이 있는것이며 그 結果는 어떠한 事態를 招來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對한 解答은 火災保險協會業務에 對한 存立價値를 再整立하여 모든 事業이 이 根源內에서 이루어지도록 分明히 하고, 對內的으로는 統一된 方向感覺의 確立을 期하고 또 나아가서는 關係者의 理解를 求하는 多角的인 努力이 必要하다고 生覺된다.

II. 火災保險業務

1979年 또는 1980年까지의 統計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火災保險業界에서 火災保險協會가 取扱하고있는 分量은 全體分量에 對하여 70%乃至 75%에 達하고 있다. 火災保險協會가 自己付物件에 對하여 베푸는 研究와 惠澤 및 業務改善等이 保險料率等 契約의 側面 또는 補償金支給을 爲始한 모든 service業務에서 契約者에 흡족한 마음을 가질수 있게 했는가? 또 할 수 있었는데도 擔當者의 잘못으로 못했는가? 또는 할 수 없는 實情이있는가? 이에 對한 檢討는 여러 가지 問題를 提起하게 될것이며, 結局機能의 再調整 및 整備가 不可避하게 될경우도 있을것이나 不必要한 業務即 保險料의 一部로 雇傭될수없는 人員은 없는가? 保險料의 一部로 雇傭되고있는

人員中에는 保險契約의 引受, 保險契約의 整理 保管, 保險金의 支給에 關한 業務, 保險契約物件의 點檢等 危險管理業務, 이런 技能의 圓滑한 運用을 爲한 支援業務外의 分野에 投入되고 있는 例는 없는가를 嚴格히 檢討하여 이의 存廢問題를 慎重히 檢討조치 하여야할 것이다.

保險料의 等式(Premium Equation)을 살펴볼 때 $P = p \times c + E$ 는 純保險料($p \times c$)와 附加保險料(E)로 構成된 事業保險料(P)를 말하고 있는바 推定保險金($p \times c$)과 保險契約引受機關의 事業費推定額(E)은 그 目的을 爲하여 使用함으로서 이 金額을 納付하는 契約者에 誠實히 報答하게 되는 것이다. 위 $p \times c$ 에서 p 는 罹災事故推定率을 指稱하는 것이며 1,000件的 契約을 引受하였으나 그중 3件的 事故가 發生하는것으로 推定될 때 事故確率(probability)은 0.003이 되며 事故의 平均크기(保險金)가 2,000萬원으로 計上되었을 때 保險者가 販賣하는 每保險證券에 包含된 保險金 對備金額은 平均 6萬원으로 나타난다. 勿論 大型物件의 保險契約에서는 保險金 對備金額으로 되는 部分이 6萬원보다도 아주 많은 金額이 되며 反面 小額契約 即 事業保險料全額이 6萬원에 未達하여 推定保險金該當金額이 그 比率에 따라 적은것도 現實이다. 그러나 付保物件을 總體의으로 檢討하여 그 平均値를 살펴보면 이러한 現象이 나타나는 것도 當然한 일이다

위의 等式中 每保險證券의 推定保險金を 나타내는 $p \times c$ 에서 우리는 事故率과 事故의 크기에 注目을 해야할 것이다. 社會나 文化는 發展하게 마련이고 이 發展의 原動力을 或者는 불 또는 「에너지」로 보고 있는바 불 또는 「에너지」에 對한 質的量的인 利用의 多樣化는 先進文明國을 이룩하는 「키」라고도 볼수있다. 即 火災保險의 側面에서 볼때 文明國이 되면 될수록 火災의 危險은 더욱 높아지며 火災保險者에 對한 社會의 要求 即 불의 克服은 더욱 높아지는것은 當然한 理致이다.

火災保險者는 營利機關이며 政府機關이나 公

益團體가 아님은 누구나가 다 알수 있는 事實이다. 불의 克服을 社會的的使命으로 賦課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어진 利潤이 追求되는 範圍內에서의 일이며 利潤을 前提하지 않은 “불의 克服”이란 營利企業인 保險會社에 떠맡길 수도 없고 또 떠맡을 수도 없다. 料率面에서 保險會社가 追求하는 利潤은 收入保險料의 5%로 普通 算定하고 있다. 純保險料 即 推定保險金이 保險料等式上에서 70%를 占有하고 있다면 保險者의 活動費는 利潤 5%를 除한 25%가 되며 여기에서 代理店手數料, 點檢等危險管理費, 事務室賃貸料 職員俸給, 其他事務費等を 지면하여야 할것이다 勿論 準備金等の 投資收益이 別途로 期待되어 費用의 不足은 이 金額으로 充當될수 있다 하겠다. 火災保險協會의 경우는 原保險會社의 追加業務費를 감한 25%에서 5%를 差減한 20%의 會費를 徵求하여 代理店手數料에 該當하는 營業活動費와 點檢等危險管理費, 職員俸給, 事務費 再保險業務, 罹災처리, 業務 等에 充當하고 있다.

Ⅲ. 火災豫防業務

英國의 CII(Chartered Insurance Institute)에서 實施한 현상논문 當選 作中 一편에 保險者의 火災豫防機能에 關한 論述을 읽은바 있는데 그 中에 保險者와 火災의 關係를 Cat and Mouse Game으로 부르고 있어 매우 감명깊었다. 火災豫防活動을 “고양이”로 指稱한다면 火災保險에서의 “불”은 “쥐”로 부를수있다는 말이였다. 쥐 即 불을 쫓는 고양이 即 保險者는 새로운 “불”을 克服하기 爲하여 不斷한 研究를 傾注하고 있음을 뜻하고 있으며 이 使命은 永久히 繼續될것이라고 끝을 맺었다.

위에서 말한 불의 克服은 保險會社의 火災豫防活動을 말하는 것이며 火災發生率의 抑制를 爲하여 不斷한 努力을 기울이는 火災保險會社의 生理를 말하는 것이다. 1980年度 英國에서 發刊

되는 保險專門紙에 依하면 火災의 發生과 이의 크기는 每年 12% 乃至 15% 增加되고 있는것이 世界的인 추세라고 記述되어 있었다. 이 發言이 正確하지 않다하더라도 불의 危險의 增大은 우리가 살고있는 社會가 確實히 發展하고 있고, 또 “에너지”利用의 質的量的인 增大에 起因한것이 確實한 以上 이뜻에 수증하는 수밖엔 별도리가 없다고 生覺된다. 불의 發生(occurrence) 即 우리가 願치않는 “불”을 克服하기 위하여 이 불을 營業의 目的으로 하고있는 火災保險會社는 이 “불”의 發生을 總體的으로 또는 個別的으로 檢討, 分析하고 處方을 마련하여 對處함으로서 公積에는 火災燒失量(Fire Waste)을 減少시키고 減少燒失量의 一部 또는 全部를 事業費(附加保險料)에 充當하게 될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모든 契約者는 更新契約에서 實債에 依한 更新契約保險料의 調整을 期待할 수 있어 負擔이 계속 줄게될 것이다. 또 火災保險會社는 “불의 發生”에 對한 研究外에 “불의 크기” 即 火災損害의 크기(size)에도 면밀한 注目を 기우려 위의 “發生”에 對한 對處를 이 “크기”에 對하여도 기우려야 할것이다. $p \times c$ 에서 보는바와 같이 또 現實에서 우리가 느끼는 바와 같이 推定火災損害額은 發生確率(推定值)에 損害額의 平均크기(推定值)를 곱하고 이를 全體取扱件數(目標件數)로 乘하였을 경우 그 會社가 目標年度에 支給할 것으로 豫測한 推定保險금이 計算되며 이에 따라 保險會社의 利潤과 事業費가 限定이 된다. 火災保險協會의 경우는 元受社의 推定保險金, 利潤 및 事業費一部를 控除한 殘餘事業費 20%로 人件費를 爲始하여 保險契約의 引受, 罹災處理, 再保險業務, 點檢等危險管理等等에 隨伴하는 모든 費用을 支辨해야 하는바 各部門間의 均衡있는 豫算配定과 支出의 統制는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하겠다. 各部門間의 豫算의 配定에는 火災保險協會와 똑같은 機關의 例를 國內에서는 參照할 수 없어 좀 難點이 있는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그 取扱業務內容으로부터야 點檢關係業務等

을 除外한 모든 部門은 他機關에서 그 例를 찾을수가 있음으로 點檢業務等에 配定할 수 있는 豫算은 自然히 他豫算을 控除한 殘餘額으로 充當할수 있다고 본다. 또하나 이 過程에서 注意해야할 것은 一般的으로 保險會社가 危險의 改善을 爲하여 또는 付保物件의 正確한 引受價格을 定하기 爲하여 實施하는 檢查(Inspection 또는 Underwriting Survey)가 있는데 이 費用은 普通 收入保險料의 3%이며 이 費用은 이保險에 參與한 모든 保險者(元受社와 再保險者)가 國內外를 莫論하고 自己保有分에 對하여 比率로 負擔한다. 即 元受社는 自己保有를 控除한 部分 即 再保險에 부치는 部分에 對하여 代理店手數料 點檢費 및 事務費等的 火災保險協會費와 自己事務費를 매글수 있도록 再保險手數料를 出再保險料에서 控除하고 殘餘額을 正味再保險料로서 再保險者에 送金하며 保險金의 支給에는 이러한 手數料와 關係없이 引受한 金額의 比率로 各 保險者와 再保險者가 分擔하게 된다.

위에서 言及한 $p \times c$ 의 等式에서 p 는 罹災發生의 確率이라 하였고 또 c 는 罹災事故의 크기라고 말했으며 또 火災豫防에 所要되는 費用은 附加保險料에 包含되어 있으며 그 數値는 普通 事業保險料의 3%線(Mr Golding의 Reinsurance參照)이라고 말했다. 保險會社가 保險料의 이 一部金額을 効果있게 使用하여 罹災率의 引下를 期하고 窮極에는 附加保險料全額에 相對되는 金額만큼의 財產損害를 火災로부터 防止하는 것을 目標로하여 事業을 展開할때 保險會社의 社會的 貢獻度는 提高되었다고 누구나가 다 認定하게 될 것이다. 火災保險會社의 火災豫防機能을 保險業務와 같이 保有하고 있는 火災保險協會의 點檢業務는 그가 지닌 使命感과 限界性を 認識하고 주어진 豫算의 限界內에서 罹災率을 最大限으로 減少시킬수있는 點檢體制的 再整備를 恒時研究 檢討함은 勿論 이를 施行함으로서 한번의 點檢과 이의 是正으로 莫大한 金額의 財產을 火災損失로부터 救出하게 된다는 事實을 모든 關係者

가 異議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業務秩序를 確立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爲해서 點檢分野에서는 現在の 罹災發生率이 千개의 契約에 3件이고 每罹災의 平均크기는 3,000萬원이며, 發生率의 增加値는 年 5%이며 罹災의 平均크기는 每年20%式 增大된다고 볼 때 다음해의 推定發生率은 3.15%이고 單位罹災의 推定크기는 3,600萬원이 되는 것으로 計算하게 될 것이다. 다음해의 罹災發生率이 0.15% 增加하는것을 豫防策을 講究하여 成功的인 制動을 걸은 結果 年末決算에서 發生率의 減少値는 目標罹災發生率 3.15% 보다 0.05%이 낮은 3.10%이었다고 할때 火災保險協會는 付保總件數의 0.05%의 罹災事故發生을 未然에 防止한 結果가 된다. 罹災事故의 規模面에서 火災豫防活動을 살펴보면 다음해의 單位平均罹災額은 20%增大된다고 본다면 3,600萬원으로 計上되나 徹底하고 效果的인 點檢等 豫防活動을 合理的으로 施行한 結果 3,200萬이 되었음을 다음해 年末에 確認하게 된다면 點檢의 效果를 이곳에서도 金錢面으로 찾을 수 있으며 每罹災의 推定平均額 3,600萬원에서 實質平均額을 差減한 殘額을 實際罹災件數에 乘하여 얻은 金額에 위 3,600萬원을 減少된 罹災件數에 乘한 金額을 합한 合計額이 豫防活動의 結實이라고 보아야 하며 그 金額이 保險料收入額中 附加保險料該當金額에 對比하여 點檢業務의 生産性和 效率性을 數値로 誇示하여야 할 것이다. 罹災發生의 原因을 正確히 把握하고 이에 對한 效果的인 對備策을 講究하기 爲하여 技術職의 創意性있는 努力과 研究가 要求됨은 勿論 罹災調査 및 處理에 直接間接으로 깊이 介入하여 그 原因과 罹災金額을 業種別, 季節別, 物件別로 分類部門別로 檢討하고, 分析하며 이를 綜合한 結果는 現在の 點檢方法과 方向에 對하여 改善方向을 提示하는 資料가 될 수 있음을 認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方向으로 點檢業務를 發展시키고자 할때 點檢業務는 保險業務와 地域別로 單一部署가 되어야 하며 그러므로서 다급하게 해야 할 일, 꼭해야 할

일, 장차 해야 할 일,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일 할 필요가 없는 일 등을 區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限定된 豫算의 效率인 執行에 一助가 될 것이다.

IV. 結 言

只今까지 本人은 過去 7年間의 經驗에 比추어 火災保險協會가 가지고 있는 異質의(?)인 技能 即 相互分離된 點檢과 保險의 데두리 안에서 살아왔으며 해야할 일을 다못한 느낌도 금할 수가 없다. 그러나 火災保險協會를 設立케 한 根據法이 그 業務를 어떻게 表現을 했건 設立會員社가 保險會社이고 그 會員社가 經費를 支辨하고 政策的인 決定은 會員社의 總會에서 決定하도록 되어 있는 以上 保險會社의 生理를 저버릴수 는 없 을 것이다. 增加一路에 있는 罹災率의 引下를 爲한 努力과 成果를 火災保險業界는 火災保險協會에 期待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는 法에도 明示 되어 있다고 본다. 또 先進各國의 大型保險會社는 自體會社內에 技術部(Engineering Department)가 있어 他部署의 業務中 技術關聯業務에 有機的인 協助를 提供하는 곳도 있고 (英國), 歐羅巴大陸各國의 會社에서는 技術系와 非技術系가 同一部署內에서 調和하는 業務執行을 期함으로서 (Swiss, 獨, 스웨덴) 그 會社의 社勢發展에 寄與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때 火災保險協會가 非技術系保險職과 非保險系技術職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多幸한 일이며 또 한편으로는 매우 서글픈 일이라 하겠다. 危險의 引受 및 管理에는 專門分野의 知識이 總動員되어야 하며 技術系나 保險系를 莫論하고 모든 知識을 혼연一體하여 知識의 綜合을 期하고 그 技能을 發揮케 함은 運用의 問題로서 所期의 目的을 십이분 達成할수 있을 것이다.

時代의 感覺에 맞추어 보험會社를 볼때 技術職의 專門的分野를 排除한 保險會社의 技能을 우리

는 滿足스럽다고 볼수없으며 오히려 무엇인가 不足한感이 있는것을 우리는 느끼게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때 火災保險協會의 人的資源은 滿足스럽다고보며 오직 남아있는 것은 合理的運用을 爲한 組織의 改編乃至調整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生覺된다.

火災保險協會라는 名稱에도 勿論問題는 있다. 協會라는 名稱아래에서 保險業務는 委任을 받아 施行하고 이 委任받은 保險을 爲한 點檢을 實施하며 이러한 모든 業務遂行에 所要되는 經費는 保險料의 一部로 充當하고 있고 또 保險業務와 點檢業務의 감독관청이 兩立하고 있음은 무엇인가 식연치 않은 相互關係를 感知하게 한다. 이러한 狀況은 “火災로 인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이란 根據法의 名稱을 勘案할 때 理解가 되며 點檢 또는 弘報는 罹災率引下에 貢獻이 되는 範圍內에서 定立할 수 있으며 또한 制限된/豫算內에서 定해진 目的을 爲한 業務活動인므로 前敍한 倅急히 해야 할일, 해야할일등의 優先順位에 따라 業務執行에 臨한다면 發展의 軌道는 自動 열리는 것이 아닌가 生覺된다.

以上에서 言及한 여러가지 問題를 結論的으로 整理하여 보면 첫째, 火保法內에서 保險의 位置를 分明히 明示하여야 하며 保險을 떠난 點檢이 있을 수 없고 또 點檢을 떠난 保險이 적어도 特殊建物에 對해서는 存在할 수 없음을 明確히 함은 勿論 實務的으로나 理論的으로 이 二個의 技能이 相互分離되어 相異한 自然人이나 機構의 指示감독을 各己받도록 하는 것은 濕雜을 招來하고 能率을 低下시키며 오직 마찰과 經費의 낭비만을 招來할것으로 生覺됨으로 이에 對한 法의 補完이 要求된다고 본다.

둘째로는 點檢과 保險의 相互補完의 性格을 적어도 對內的으로만은 깊히 또 남보다 앞서서 認識하고 相對便이 없는 自己便 即 點檢이 없는 保險, 또는 保險이 없는 點檢은 結局에는 自己

自身の 否定이며 火保(火災保險協會, 以下같은)에 對한 否定이며 發展은 고사하고 火保의 將來를 매우 어렵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것이다. 따라서 點檢과 保險이 一體가 더욱곧게 빨리 될 수 있도록 機構의 編成에도 反影시켜야 하지 않을까 生覺된다. 서울全地域을 數個部分으로 分離區劃하여 各區劃內의 特殊建物에 對한 點檢과 保險을 한사람의 責任者지 揮下에 그 區域擔當部署에서 다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本部綜合部署에서는 一線部署의 業務活動指針과 基準을 制定示達하고 實質의 分析과 綜合 및 評價의 結果를 다음 年度의 業務指針과 基準에 反影시켜 效率性있는 業務執行으로 罹災率의 引下에 더욱 寄與度を 높혀야 할것이다.

셋째로는 特殊建物所有主의 點檢과 保險에 對한 理解度의 양양이라고 본다. 火保에서는 其間 많은 弘報를 하였고 또 씨-비스를 提供했으며 이제는 그間에 있었던 權力層特殊建物所有主의 橫暴도 아주 적어졌을 것으로 生覺된다. 그러나 保險者로서도 해야할 義務는 빨리하는것이 妥當하다고 본다. 其間關係當局과 累次 協議하여온 點檢結果를 更新契約에 反影시켜 特殊建物所有主가 法에 定한 義務를 다했을 때 또 罹災率이 낮을때 更新契約 保險料의 割引 또는 割增體制를 特別히 確立하여 非特殊建物所有主보다 利得이 될수 있는 特惠를 制度面에서 確立하는 것은 무엇보다 重要하며 이의 施行與否는 火保의 發展與否에 重大한 影響을 줄것으로 본다.

넷째 즉 마지막으로 감독 機關의 兩頭形態를 止揚하는 문제이다. 火災保險協會는 單一機關의 감독밑에서 그 使命을 다해야 할 것이며 業務上 關係가 있는 또는 감독하는 機關이라고 하더라도 火保에 對하여 業務上指示하거나 要求事項이 있을 때에는 定해진 機關을 通하여 그 意思를 전달하는 것이 可하다고 보며 그렇게 하기 爲해서는 이러한 취지를 法에 明示하여야 할 것이다. (☆)